

부동산중개보수 및 실비 기준표

1. 주택 중개보수 요율

거래 내용	거래 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

2.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)

거래 내용	거래 금액	상한 요율
매매·교환·임대차	실거래금액	1천분의 9

●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(공인중개사법 별표2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)

건축물 종류	거래 내용	상한 요율
오피스텔(전용 입식부엌, 화장실,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㎡이하)	매매·교환	1천분의 5
	임대차	1천분의 4
그 외 (전용면적 85㎡초과)	매매·교환·임대차	1천분의 9

※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서 월세의 경우, 「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액 × 100)」으로 산출. 다만, 이와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는 「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액 × 70)」을 적용.

3.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

실비 내용	금액	부담자	지불 시기
▶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▶ 제증명 발급·열람 수수료 ▶ 교통비, 숙박료 등 여비	▶ 1건당 1,000원 ▶ 발급·열람 수수료 ▶ 실비	매도인 임대인	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한 후에 지불
▶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▶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▶ 사무처리에 필요한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▶ 교통비, 숙박료 등 여비	▶ 예치기관 수수료 ▶ 보험료·이에 준하는 비용 ▶ 발급·열람 수수료 ▶ 실비	매도인 임대인	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

민원접수처				공제가입·상담접수처			
인천시청 토지정보과	440-4562	남동구청 토지정보과	453-2482	인천지부	875-6321	남동구지회	462-6321
중구청 민원지적과	760-7829	부평구청 토지정보과	509-6942	중구지회	882-6321	부평구지회	504-6321
중구(영종) 교통지적과	760-7769	계양구청 토지정보과	450-5325	동구지회	773-6321	계양구지회	543-7211
동구청 민원지적과	770-6363	서구청 토지정보과	560-4815	미추홀구지회	432-6321	서구지회	568-6321
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	880-4247	강화군청 민원지적과	930-3263	연수구지회	818-6321	강화군지회	934-6320
연수구청 공간정보과	749-7584	옹진군청 종합민원과	899-2462				